

「비과세종합저축 특약」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약관명 : 「비과세종합저축 특약」
- 개정 시행일 : 2026년 1월 1일 (목)
-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미적용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1조(약관의 적용) <생략> 제2조(가입대상자)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(단,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『소득세법』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<추가>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는 제외한다)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1. 만65세 이상인 거주자 <신설> 2. ~ 6. <생략> 제3조 ~ 제14조<생략> <생략> [부 칙1] ~ [부 칙3] <생략> <신 설>	제1조(약관의 적용) <좌동> 제2조(가입대상자)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(단,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『소득세법』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<u>연간</u>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는 제외한다)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1. <삭제> 65세 이상인 거주자 <u>중 기초연금수급대상자</u> 2. ~ 6. <좌동> 제3조 ~ 제14조<좌동> <좌동> [부 칙1] ~ [부 칙3] <좌동> <u>[부 칙4]</u> <u>① 이 특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가입자는 기존특약을 적용받습니다.</u>	-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반영